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1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 (김영환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25.
- (3) 회 부 일 : 2024. 10.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 (김영환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환의원안	정부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46조제1항) ○ 공제대상자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원)</u>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 ○ 공제율: <u>1.0%</u> ※ 2026.12.31.까지 1.3% ○ 연간 공제한도: 500만원 - 특례: 2026.12.31.까지 1천만원	☐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공제한도 삭제 등 ○ 공제대상자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u>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u> ※ 매출기준 법률 규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공제율: <u>1.3%</u> ○ 연간 공제한도: <u>1천만원</u>	☐ 공급가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u>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0.5%</u> ※ 2026.12.31.까지 <u>0.65%</u> - 그 밖의 사업자: 1.0% ※ 2026.12.31.까지 1.3% ○ (현행과 같음)

* 김영환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1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8)

□ 2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대금을 결제받은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0.5%(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의 하향조정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1.0%(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김영환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자의 공급가액 기준(10억원)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1.3%)과 공제한도(1,000만원)에 대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3%의 공제율과 1,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영구화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¹⁾에서는 숙박업·음식점업·소매업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발급 또는 결제금액의 1.0%(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1994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시행되었는데,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세원이 포착되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었음.

세액공제율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0.5%를 공제하였고, 1996년 1%, 2000년 2%로 공제율이 인상되었다가 2004년에 다시 1%로 축소되었음. 2005년에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이 침해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인상되었음.

2008년에는 음식점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 그 외에는 1%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우대공제율(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외의 경우 1.3%)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이후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씩 총 4회 연장되었음.

2018년에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음. 2021년부터 우대공제한도와 우대공제율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고, 2023년에는 우대공제한도와 우대공제율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음.

2021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율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이 1.3%로 조정하였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1994 ~ 1995	1996 ~ 1998	1999	2000 ~ 2003	2004	2005 ~ 2007	2008	2009 ~ 2012	2013 ~ 2018.1기	2018.2기 ~ 2021.1기	2021.2기 ~
공 제 율	개인사업자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0.5%	1%	1%	2%	1%	1%		(기)1.0% (우)1.3%	(기)1.0% (우)1.3%	(기)1.0% (우)1.3%	(기)1.0% (우)1.3%
	1.5%							2%	(기)2.0% (우)2.6%	(기)2.0% (우)2.6%	(기)2.0% (우)2.6%		
공제 한도		기본	-	-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우대	-	-	-	-				700만원	-	1천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기준 동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238만명이고, 이에 따른 세액 공제 규모는 3.0조원 수준임²⁾.

2) 자료: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지원 규모]

(단위: 만명, 억원)

연도	구분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합계
		음식숙박	기타	계	음식숙박	기타	계	
2018년	인원	50.5	78.1	128.6	17.1	45.6	62.7	191.3
	금액	10,681	9,161	19,842	393	1,084	1,477	21,319
2019년	인원	53.0	82.3	135.3	17.3	49.1	66.4	201.7
	금액	11,848	9,919	21,767	423	1,214	1,637	23,404
2020년	인원	54.2	84.9	139.1	16.4	46.9	63.3	202.4
	금액	11,270	10,375	21,645	409	1,096	1,505	23,150
2021년	인원	48.7	83.8	132.5	21.0	50.6	71.6	204.1
	금액	11,764	10,804	22,568	1,208	1,634	2,842	25,411
2022년	인원	52.4	93.3	145.7	30.8	61.5	92.3	238.0
	금액	14,279	11,349	25,628	2,129	2,086	4,215	29,843

주) 인원은 2기 기준

자료: 국세통계연보

-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조정하려는 정부안과,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1.3%의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김영환의원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세제혜택을 통한 과표 양성화의 유인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임.

2023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861만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263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92.7억건, 결제금액은 약 389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2022년 기준 약 4,500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2023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6,810,202.3	28,608,422.5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192,119.0	1,262,875.4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급금액	1,164,639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발급건수	4,530	4,508	4,132	4,327	4,476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둘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 71억원으로, 동 특례와 관련한 조세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 3조 2,17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19,125	22,570	23,473	22,995	26,658	30,071	33,328	32,179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영환의원안의 논거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동 제도는 과표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 및 가맹점 수수료율(2022년 1월 기준)]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 0.5%	영세 : 0.25%
중소1: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1: 1.1%	중소1: 0.85%
중소2: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소2: 1.25%	중소2: 1.0%
중소3: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3: 1.5%	중소3: 1.25%

자료: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둘째,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³⁾, 코로나19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개인사

3)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2021. 4/4분기) 0.5, (2022. 4/4분기) 0.6 (2023. 4/4분기) 1.3 (2024. 1/4분기) 1.5 (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관계부처 합동)

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 이후 상승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관계부처 합동(국세통계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160